대학혁신위원회규정

제정 2022. 3. 2.
개정 2025. 3.2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운영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, 교무위원(이하 “당연직 위원”이라 한다)과 주요 사업 책임자 및 재학생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5.3.26.)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
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3조(임무) ① 총장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한다.

② 재정지원사업별 주관부서를 정하며 해당 사업의 단장이 업무를 수행한다.

제4조(역할) 대학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정부 재정지원사업(중앙정부, 지자체) 운영의 총괄적 점검
2.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에 기반한 투자계획 수립
3.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및 총괄적 환류
4.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·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
5. 그 밖에 대학혁신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
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사업비 집행 및 관리) ① 사업비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구분에 따라 대학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한다.

②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사업별 위탁기관「사업비 집행 및 관리 요령」, 대학회계 예산 관련 규정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대학 자체 기준 등에 따라 집행한다.

③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7조(세부사항) 그 밖에 각 사업단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사업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수행된 사업단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